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정(법률 제21013호, 2025.8.14.시행)된 「초·중등교육법」에서 교과용도서와 교육자료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기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임되어 있던 교과용도서의 정의 및 범위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교육자료로 정의된 지능정보화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정·검정도서 수정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 업무의 민간 위탁 근거 규정을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상 신설하려고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의 위임 근거 조항을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하고, 법률상 위임사항에서 제외된 교과용도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삭제함(안 제1조)

나.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교과용도서와 교과서 및 지도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기에,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내 관련 내용을 삭제함(안 제2조)

다. 교과용도서 검정을 위해 실시하는 기초·본심사에서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함(안 제9조)

라.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 관보에 공고하는 사항 중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항을 삭제하고, 조문 내 용어를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부합하게 수정함(안 제11조)

마. 교육부장관이 국정·검정도서의 수정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을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으로,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을 “오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를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로 한다.

제11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을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으로 한다.

제2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국·검정도서 수정 관련 업무를 유관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용도서의 범위·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선정 및 가격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초·중등 교육법」 제29조제4항----- ----- 저작· 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서 및 지도서를 말한다. 2. “교과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 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 는 학생용의 서책, 지능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 트웨어(이하 “디지털교과서” 라 한다) 및 그 밖에 음반·영 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 한다. 3. “지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학 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 는 교사용의 서책 및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전자저작물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삭 제> <삭 제> <삭 제>

4. ~ 8. (생 략)

제9조(검정방법) ① (생 략)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및 기술 결함(디지털교과서만 해당한다) 등을 조사한다.

③ 본심사는 제7조제1항제4호의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는 기술·서비스의 적합성 여부를 포함한다)를 심사한다.

④ (생 략)

제11조(합격공고) 교육부장관은 제10조 및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검정도서의 합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

1. (생 략)

2. 교과용도서의 종류의 구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생 략)

나. 디지털교과서: 사용방법 안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용환경

다. 그 밖에 음반·영상 등의

4. ~ 8. (현행과 같음)

제9조(검정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오류 -----

-----.

③ -----

----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합격공고) -----

-----.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삭 제>

다. 「초·중등교육법」 제29

<u>전자저작물: 종류 · 수량 · 용량 및 사용환경</u>	<u>조제2항에 따른 전자적 매체에 실어 학생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게 발행한 전자책, 음반 또는 영상: ---</u> ----- ----
제26조(수정)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26조(수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국·검정도서 수정 관련 업무를 유관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받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